

◎ 환경처고시제91-62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시설을 분뇨 처리시설로 고시합니다.

1991년 10월 24일

환경처장관

분뇨처리시설

1. 액상부식 분뇨처리시설

투입설비, 액상부식처리설비, 응집반응설비, 고도처리설비, 오니처리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무희석 분뇨처리시설

공정	공정별구조
	구조
전처리	1) 전처리시설로서, 투입설비, 스크린, 침사조, 저류조를 구비하여야 함. 2) 저류조는 스크발생을 억제하고 교반할 수 있는 예비 포기장치를 구비하여야 함.
1차처리 (액상부식처리)	1) 액상부식조를 구비하여야 하며, 액상부식조의 용적은 평균체류일수가 8~10일이 되도록 함. 2) 액상부식조에는 포기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포기장치의 성능은 용존산소 농도가 0.1~0.5mg/l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액상부식조의 BOD 부하를 MLSS kg당 0.1~0.2kg이 되도록 조절할 수 있는 유량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2차처리 (응집반응처리)	1) 2차처리를 위하여 응집반응조를 갖추어야 하며, 응집반응조에는 응집제를 투입할 수 있는 설비와 교반장치를 구비하여야 함. 2) 응집반응조 내부의 pH를 4.0~4.5로 유지할 수 있도록 pH 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함. 3) 침전된 오니의 탈수를 위한 탈수설비를 구비하여야 함.
3차처리 (고도처리)	1) 3차처리를 위하여 모래여과설비 및 활성탄 흡착설비를 구비하여야 함. 2) 3차처리조의 용량은 색도, 질소 등이 제거될 수 있도록 평균 수리학적 체류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함. 3) 3차처리조는 여재의 역세척 및 재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오니처리	1) 오니처리설비는 일반 분뇨처리방법에 준함.

2. 발효식 분뇨처리시설

호기성 발효에 의한 발효식 분뇨처리시설로서 다음의 공정별 구조를 갖춘 전처리설비, 생물학

적 처리설비, 물리화학적 처리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시설

공정	공정별구조
	구조
전처리	1) 분뇨, 연탄재, 기타 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하며, 분뇨는 총 사용량의 50% 이상, 기타 첨가물은 10% 이내로 함. 2) 기타 첨가물로는 생산된 비료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수분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왕겨분말, 톱밥, 폐가분, 농수산폐기물, 발효축진제 등을 사용함. 3) 분뇨는 투입구, 수조, 여과기, 저류조를 거쳐 발효조로 유입시키고, 연탄재는 하치장, 분쇄, 건조공정을 거쳐 건조 또는 선별 과정을 거친 기타 첨가물과 혼합하여 발효조로 유입되도록 하되 모든 공정이 밀폐시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악취발생을 방지하도록 함.
생물학적처리	1) 전처리시설에서 이송된 혼합물의 발효를 위하여 발효조(터널식 등)를 설치하여, 발효조에는 보온장치, 공기공급장치 및 이동식 회전바켓(Belt Bucket)을 설치하여 발효조 내의 온도조절, 산소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호기성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산화가 고르게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도록 함. 2) 발효조 내에서의 체류시간은 7일 정도로 하고, C/N비는 15~20, 온도는 최고 70°C 최저 45~55°C, 수분함량은 50~60%, 공기공급량은 0.39~1.27m ³ /(분·톤)을 유지시킴. 3) 악취 등 나쁜 냄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발효공기를 밀폐시키거나 탈취시설을 갖춘 것.
물리화학적처리	1) 간접 열풍식 건조장치를 설치하여 수분함량을 40%이하로 조절함. 2) 공기 공급장치와 산화제 분무장치를 갖추어 원료가 완전 부숙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정조를 설치하며, 안정조는 내산, 내알카리성, 내식성, 내마모성 재료를 사용함. 3) 안정조 내에서의 체류시간은 10일 정도로 하며, 7일 경과후 산화제인 차아염소산을 분무함. 4) 강제통풍식 건조장치에 의한 탈수로 최종 수분함량을 20%이하로 만들.

3. 가압포기식 분뇨처리시설

투입설비, 저류설비, 가압포기처리설비, 부상 분리설비, 소독설비, 탈수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가압포기조에 의한 처리시설

공 정	공 정 별 구 조
	구 조
전처리	1) 투입설비, 침사조, 저류조, 분리조, 조정조로 구성되며, 2) 전처리시설의 구조·용량은 일반 분뇨처리방법의 경우와 동일함.
1차처리 (가압포기처리)	1) 포기조는 완전밀폐식으로 하여야 하고 고압(1.6kg/cm ² 이상)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고압을 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함. 2) 포기조 내에는 산소공급설비를 갖추어야 함. 3) 가압포기조의 유효용량은 1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부하 1kg당 0.08m ² 이상으로 하여야 함.
2차처리	1) 부상분리조, 응집조 등 화학적 처리설비를 갖추거나 2) 생물학적 처리설비를 갖추어야 함.
오니처리	1) 오니계량조, 오니저류조, 오니농축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2) 오니처리시설도 전처리설비와 마찬가지로 일반 분뇨처리방법의 경우와 동일함.

4.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

전처리, 1차처리(감압증발), 2차처리(안스라 사이트, 활성탄, 제오라이트 충전설비) 및 오니처리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물리적 처리시설

공 정	공 정 별 구 조
	구 조
전처리	1) 투입설비, 스크린, 저류조로 구성되며, 2) 저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보일러 연소에 연결하여 연소시킬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함.
1차처리	1) 감압증발장치, 응축수 탱크설비로 구성되며, 완전 밀폐식 구조이어야 함. 2) 감압증발장치는 보일러, 증발반응조, 감압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3) 증발반응조의 내부는 진공도 약 600mmHg, 온도 65°C전후로 유지시켜야 함. 4) 증발반응조의 내벽과 가온용 열판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고, 기타 설비도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방식 도료를 사용하여 방식처리되어야 함. 5) 증발반응조 내부의 스케일 제거를 위한 스크레파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스크레파는 내열성이 강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함.
2차처리	1) 1차 감압증발 처리결과 발생되는 응축수(분리액)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2차 처리설비는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

공 정	공 정 별 구 조
	구 조
	리공법을 적용할 수 있음. 3) 2차처리설비의 구조가 여과장치일 경우 여과의 역세척 및 재생처리설비를 갖추어야 함.
오니처리	1) 오니저류조를 갖추어야 함. 2) 오니의 처리는 가급적 재생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되 재생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일반 분뇨처리방법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부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고시의 폐지) 환경청고시 제87-31호, 제88-24호, 제89-14호, 제89-16호는 이를 폐기한다.

◎ 환경처고시제91-6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제81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진동검사 및 검사용기기·교정용품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년 11월 2일

환경처장관

·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진동검사 및 검사용기기·교정용품검사에 관한 수수료

1. 제작차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수수료

가.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단위: 원)

검 사 항 목	수수료	비 고
-배출가스검사		(1) 검사담당자가 현지출장으로 검사 의뢰자의 검사장비,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1일1인 기준으로 27,400원을 가산한다. (2) 부가가치세 별도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검사	540,000	
· 증발가스 검사	232,000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 가스 검사	631,000	
-소음검사		
· 가속주행소음	49,000	
· 배기소음	10,000	
· 경적소음	10,000	

나. 배출가스 길들이기 및 내구성 시험

검 사 항 목	수수료	비 고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 시험(6, 400km이내)	3,097,000	(1) 검사담당자가 현지출장으로 검사 의뢰자의 검사장비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1 일 1인 기준으로 27,400원을 가산한다. (2) 내구성시험의 경우 80,000km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 시험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별도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 시험 (20시간 이내)	620,000	
-내구성시험 (80,000km기준)	29,589,000	

검 사 항 목	수수료	비 고
-소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26,000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및 그 부속 기기	89,000	

나. 운행차검사용기기의 정도검사

검 사 항 목	수수료	비 고
-CO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7,000	부가가치세 별도
-HC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7,000	
-CO/HC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61,000	
-매연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2,000	
-소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2,000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및 그 부속 기기	22,000	

2.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수수료

(단위: 위)

검 사 항 목	수수료	비 고
-배출가스 검사 •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	7,000	부가가치세 별도
• 매연	7,000	
-소음검사 • 배기소음	10,000	
• 경적소음	10,000	

다. 소음·진동 검사용기기 수수료

검 사 용 기 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비 고
-소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26,000	12,000	부가가치세 별도
-진동측정기(진동 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164,000	14,000	

3. 자동차검사용기기, 소음·진동검사용기기 및 교정용품 시험수수료

가. 운행차 검사용기기의 성능시험

검 사 항 목	수수료	비 고
-CO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28,000	부가가치세 별도
-HC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03,000	
-CO/HC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37,000	
-매연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83,000	

라. 검사용기기의 교정용품 검·교정 수수료 및 공급가격

검 사 항 목	수수료	비 고
-매연측정기의 표준 지검정·공급	8,000	(1) 부가가치세 별도 (2) ()내 금액은 교정용품을 제공받아 검정만을 하는 경우
-매연측정기의 표준 지교정	5,600	
-매연측정기의 매연 포집용 여과지	1,500 (700)	

검 사 항 목	수수료	비 고
(1BOX / 100 대) 검정 · 공급		
-매연측정기의 매연 포집용 여과지(1롤 /50m)검정 · 공급	17,000 (6,000)	
-표준가스(표준품 질항목당)검정	24,000	

마.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용기기(현지출
장으로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검 사 용 기 기	수 수 료		비 고
	성능시험	정도검사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15,000	60,000	부가가치 세별도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18,000	57,000	
-원동기 및 차대동 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 속기기	원동기 : 171,000 차 대 : 195,000	원 동 기 : 118,000 차 대 : 135,000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143,000	63,000	
-자동차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및 탄 화수소)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337,000	61,000	
-입자상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6,000	76,00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처고시제91-7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결합 확인검사용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1991년 11월 2일

환경처장관

· 자동차 배출가스결합 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등
에 관한규정

환경관리인. 199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 결합확인검사 대상 자동차 선정방법 ·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자동차선정) ①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간 판매 자료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료는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차종에 대하여 인증받은 동일차종별로 구분하여 판매일자(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별 판매자동차의 차종 · 형식 · 원동기 또는 차대번호, 구입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료를 검토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송부한다.

제3조(선정계획수립 및 승인)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판매자료(당해연도 이전에 송부받은 것을 포함한다)를 근거로 하여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의 결합확인 검사대상자동차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계획기간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인증받은 동일차종별로 50대 미만일 경우에는 계획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선정계획에는 대상차종별, 예비선정을 위한 설문대상수, 선정단계별 기간, 운반방법 등 선정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제작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결합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예비 선정)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결합확인 검사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설문서에 의하여 예비선정을 한다.

제5조(검사대상자동차 설문조사 방법)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료에 기록된 자동차소유자에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문서를 우송하여 설문내용을 파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문서의 발송은 동일차종별로 200명 이상으로 하되, 자동차의 판매대수 등을 감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10대 이상 선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문서 발송대상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설문조사 내용검토)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문조사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를 “갑”
2. 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로 이용가능한 자동차를 “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문서 구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 등)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자동차제작자와 함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갑” 또는 “을”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현지 확인하여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선정하되 “갑”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을 위한 점검항목은 별표 2에 의하여 판단하고, 간단한 현지 정비·점검 및 시험주행 등을 하여 그 자동차소유자와 검사기간동안 임대 등 서면 합의에 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③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선정자동차 봉인방법에 의하여 배출가스에 관련이 많은 촉매장치, 전자조절장치(ECU), 캐니스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등에 대하여 즉시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자동차의 인수·인계 등)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를 그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인수하여 자동차공해 연구소장에게 인계하고,

결함확인검사가 완료되면 그 자동차를 자동차공해 연구소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와 합의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반과정 및 시험기간동안에 그 자동차의 손상예방 등 안전유지를 위한 보험계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의 인수·인계방법, 안전유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9조(결함확인검사를 위한 정비 등) 결함확인검사를 위한 정비는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처고시 제91-26호)제24조의 규정과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정비에 소요되는 자동차의 부품과 정비인원은 그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10조(결함확인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자동차의 선전비용 및 운반비용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자동차의 종류, 용도 등 그 자동차의 활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그 자동차소유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용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그 자동차소유자에게 지불하고, 후에 그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회수하거나, 직접 그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자동차제작자가 지불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결정·지불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자동차제작자의 의견을 들어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1조(선정현황보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결함조사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으로 인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포함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또는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2.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이미 판매된 동일차종에 대한 결함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7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자동차제작자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종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여부를 판정하거나,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동일차종 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대수의 자동차를 선정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등 결함여부를 재입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자동차의 선정·정비·비용부담 등은 제4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 및 별지서식 : 생략

◎ 환경처고시제91-73호

환경오염공정시험법(환경청고시 제83-9호) 중 대기분야의 “대기편, 악취편”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1년 11월 5일

환경처장관

※ 내용 : 생략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시험중에 있는 시료는 종전고시에 의하여 시험한다.

◎ 환경처고시제91-74호

환경오염공정시험법(환경청고시 제83-9호) 중 대기분야의 “소음편, 진동편”을 삭제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환경관리인. 1991.12

합니다.

1991년 11월 5일

환경처장관

※ 내용 : 생략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시험중에 있는 시료는 종전고시에 의하여 시험한다.

◎ 환경처 고시 제91-75호

환경기술감리단의 환경기술감리대상시설 및 신청절차 개정고시(안)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2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환경기술감리대상시설 및 신청절차(환경처고시 제91-11호, '9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1. 11. 12

환경처장관

1. 환경기술감리대상시설

구분	환경 기술 감 리 대 상 시 설
가. 공통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폐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가 처리자로 지정받기 위한 경우 2.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대상시설을 변경하여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의 증가량이 50m³ 미만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1일 30m³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축산폐수자가처리자로 지정받기 위한 경우

2. 환경기술감리신청 구비서류

사업자가 기술감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비서류 3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기술감리신청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신청

- 1) 사업개요
-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 3) 공정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다만, 소음·진동은 소음·진동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5) 배출시설의 도면 (다만, 폐수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배출시설 도면은 제외)

6)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관계서류

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가처리자로 지정받기 위한 경우

1) “가”의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위한 기술감리신청서류중 5)~6)을 제외한 서류

- 2) 자가처리에 따른 처리공정 및 그 도면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 사업계획서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
- 5)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해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부위 표시도면
-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 (이동식 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의 이용 등)

7) “가”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위한 기술감리신청서중 위 1)~6)을 제외한 관계서류

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 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1) “가”의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위한 기술감리 신청서류중 5)~6)을 제외한 서류
- 2) 방지시설의 설치 내역서
- 3) 방지시설의 도면
- 4)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내역서
- 5) 방지시설 등록업 관계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

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축산폐수 자가처리자로 지정받기 위한 경우

- 1) 사업개요
- 2)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 3)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 4) 자가처리에 따른 처리공정 및 그 도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처고시제91-7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년11월13일

환경처장관

일련번호	물 질 명	심 사 결 과
91-5	0,0-디에틸 S-에틸티오메틸 포스포로디티오 산 0,0-Diethyl S-ethylthiomethyl phosphoro-dithioate, Phorate (298-02-2) C ₇ H ₁₇ O ₂ PS ₃	· 특정유독물에 해당됨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93. 12. 31. 까지 농약(5%입제) 제조용수입의 경우에는 제외
91-6	N-(포스포노메틸)글리신 트리메틸 술포늄 염 N-(Phosphonomethyl)glycine trimethyl sulfonium salt, Sulfosate, Glyphosate-trimethylsulfonium (81591 - 81 - 3) C ₃ H ₇ NO ₅ P · C ₃ H ₉ S	· 유독물에 해당안됨

일련번호	물 질 명	심 사 결 과
91-7	(1RS,2SR,4SR)-1, 4-에폭시-p-멘트-2-일-2-메틸벤질 에테르(1RS,2SR,4SR)-1, 4-epoxy-p-menth-2-yl 2-methylbenzyl ether; Cinmethylin [87818 - 31 - 3] C ₁₈ H ₂₆ O ₂	· 유독물에 해당안됨
91-8	1-(4, 6-디메톡시피리미딘-2-일)-3-(3-트리플루오로메틸-2-피리딜술포닐)우레아 1-(4, 6-Dimethoxypyrimidin-2-yl)-3-(3-trifluoromethyl-2-pyridylsulfonyl) urea; Flazasulfuron [104040-78-0] C ₁₃ H ₁₂ F ₃ N ₅ O ₅ S	· 유독물에 해당안됨
91-9	S-벤질 1, 2-디메틸프로필 (에틸)티오카르바미산 S-Benzyl 1, 2-dimethylpropyl(ethyl) thiocarbamate; Esprocarb [85785 - 20-2] C ₁₅ H ₂₃ NOS	· 유독물에 해당안됨
91-10	1-(α-(4-클로로-α-시클로프로필벤질리덴아미노-옥시)-p-톨릴)-3-(2, 6-디플루오로벤조일)우레아 1-(α-(4-chloro-α-cyclopropylbenzylideneamino-oxy)-p-tolyl)-3-(2, 6-difluorobenzoyl) urea; Flucycloxuron [113036 - 88 - 7] C ₂₅ H ₂₀ ClF ₂ N ₂ O ₃	· 유독물에 해당안됨
91-11	이소프로필 3, 4-디에톡시카르보아닐산 Isopropyl 3, 4-diethoxycarbamate; Diethofncarb [87130 - 20 - 9] C ₁₄ H ₂₁ NO ₄	· 유독물에 해당됨
91-12	S,S'-디메틸 2-디플루오로메틸-4-이소부틸-6-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3,5-디카르보티오산 S,S'-Dimethyl 2-difluoromethyl-4-iso butyl-6-trifluoromethylpyridine-3, 5-dicarbo-thioate	· 특정유독물에 해당됨

일련번호	물 질 명	심 사 결 과
91-13	;Dithiopyr [97886 - 45 - 8] C ₁₅ H ₁₆ F ₅ NO ₂ S ₂ 2-tert-부틸-5-(4-tert-부틸벤질티오)-4-클로로피리다진-3(2H)-온 2-tert-Butyl-5-(4-tert-butylbenzylthio)-4-chloropyridazin-3(2H)-one; Pyridaben [96489 - 71 - 3] C ₁₉ H ₂₅ ClN ₂ OS	· 특정유해물에 해당됨 · 어독성물질이므로 수질 환경보전 및 수생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양어장, 저수지, 해역 등에 유입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수도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환경처고시제91-7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제424호 및 제3조(별표 2) 제9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991년11월13일

환경처장관

유 독 물 지 정		
지정번호	물 질 명	
426	S,S'-디메틸 2-디플루오로메틸-4-이소부틸-6-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3,5-디카르보티오산 S,S'-Dimethyl 2-difluoromethyl-4-isobutyl-6-trifluoromethylpyridine-3, 5-dicarbothioate; Dithiopyr [97886 - 45-8] C ₁₅ H ₁₆ F ₅ NO ₂ S ₂	
427	2-tert-부틸-5-(4-tert-부틸벤질티오)-4-클로로피리다진-3(2H)-온 2-tert-Butyl-5-(4-tert-butylbenzylthio)-4-chloropyridazin-2(2H)-one; Pyridaben [96489 - 71-3] C ₁₉ H ₂₅ ClN ₂ OS	

특 정 유 독 물 지 정		
지정번호	물 질 명	
132	2-tert-부틸-5-(4-tert-부틸벤질티오)-4-클로로피리다진-3(2H)-온 2-tert-Butyl-5-(4-tert-butylbenzylthio)-4-chloropyridazin-3(2H)-one; Pyridaben [96489 - 71 - 3] C ₁₉ H ₂₅ ClN ₂ O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내가 가꾼 환경풍토 후손들이 본 받는다